

#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42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9. / /  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제안이유

-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1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및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
## 주요내용

가.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(안 제 2조의2)

## 제정 조례안 : 붙임

##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##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
-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2조의2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# 사전예고결과 : 붙임

##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#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

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안산시”를 “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안산시”를 “시”로 하고, “시장”을 “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중 “경우”를 “때”로 한다.

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의 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4조 제목 중 “운영관리”를 “운용·관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“범위 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준용하되”를 “따르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이외의”를 “제1항 이외의”로 한다.

제13조2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의2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사회복지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사회복지과장 하 회 용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노인복지담당 차 현 실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 선 우 (행정 3353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##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관계규정의 준용등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</p>	<p>제12조(관계규정의 준용등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제1항 이외의 ..... .....</p>
<p>제13조(기금결산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3조(기금결산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.....따른..... ....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.....따라..... .....</p>